

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 경위

- 발의일자: 2023. 11. 9.
- 발 의 자: 김종일 의원 외 1명
- 회부일자: 2023. 11. 10.(의안번호 제510호)
- 검토기간: 2023. 11. 13. ~ 11. 30.

2. 주요 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의 범위(안 제3조~제4조)
- 사망위로금 지급 절차(안 제5조)
- 참전명예수당 지급 절차(안 제6조~제7조)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4조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13조
- 「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
- 「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~제4조

나. 입법예고: 2023. 11. 16. ~ 11. 21.(접수된 의견 없음)

다. 예산조치: 집행기관 협의(2024년도 본예산 반영 예정)

4.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6.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마련된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과 「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망위로금 지급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조례 전반을 다듬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 타당성과 제도적 필요성을 갖춘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됨.
-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2조에서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참전유공자의 정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수정하였고, 대구광역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¹⁾ 지원사업을 안 제4조에 추가한 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 안 제5조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등에게 지원하는 사망위로금²⁾ 지급 절차를 정비하되 지급 금액은 종전대로 유지하였음.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역시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지원사업을 조정하는 경우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, 타 구·군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 지역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망위로금 증액 또는 특별위로금³⁾ 신설 여부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1) 이 참전명예수당은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(월 39만원)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마련한 금전적 지원 제도로서, 「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현재 월 10만원(전액 시비)을 지급하고 있으며, 2024년부터는 월 13만원(시비 112,000원 / 구비 18,000원)을 지급할 예정임. 본 조례안의 참전명예수당 규정 신설은 구비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 *2023년 10월 현재 우리구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인원은 768명임.

2) 사망위로금은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책정한 장제보조비(20만원)가 현실적으로 장례비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, 수성구·달성군·군위군은 30만원을 지급하고 그 밖의 구에서는 우리와 같이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. *최근 3년간 우리구의 사망위로금 지급 인원은 연간 50명 내외임.

3) 특별위로금은 대구시 구·군 중 달성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으로서 연 1회 30만원을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하고 있음.